

해안산책로 난간보수공사 작업 중 떨어짐

공사명	OO~OO간 해안산책로 난간보수공사	발생일시	2019.4.8.(월) 10:50분경
재해형태	떨어짐	재해정도	사망 1명
소재지	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재	공사규모	해안산책로
재해개요	2019.4.8.(월) 10:50분경, OOOO에서 시공 중인 「OO~OO간 해안산책로 난간 보수공사」 현장에서 난간 조립·설치 작업 중에 피재자가 몸의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 중에 2019.7.29.(월)23:48분경 사망한 재해임.		
재해상황도			
재해발생 원인	가. 고소 작업 시 추락 방지조치 미실시 및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○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 시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,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함 (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, 44조) ☞ <u>별도의 추락방지 조치 없이 난간이 해체된 산책로에서 작업 실시</u> 나. 적합한 개인보호구 미지급 및 미착용 ○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 시 근로자에게 안전모,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여야 함(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) ☞ <u>안전모는 착용하였으나 안전대 미지급 및 미착용 한 상태로 작업 실시</u>		
예방대책	가. 고소 작업 시 추락 방지조치 실시 및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○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 시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,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나. 적합한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○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 시 근로자에게 안전모,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여야 함		



해안 산책로 난간(기인물)



추락지점(바닥 및 암석)